

제23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 조례안
(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39호
- 나. 제출자 : 도병두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2. 10. 7.
- 라. 회부일자 : 2022. 10. 7.

2. 제안이유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거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조례의 적용대상(안 제3조)
- 다.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안 제4조 및 제5조)
- 라.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6조 및 제7조)
- 마. 의견청취 및 법률상담 지원(안 제8조 및 제9조)
-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4. 관계법령

가. 「근로기준법」

나.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5. 검토의견

① 제정 배경

-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일반적(광의)으로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협의로는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함.
 - * 플랫폼을 기능 및 역할에 따라 ‘단순히 구인구직 정보를 소개하는 플랫폼’과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주는 플랫폼’으로 구분 가능 → 광의는 두 유형 모두를 포함
-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전국적으로 약 179만명(취업자의 7.4%)이 있으며,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만명(취업자의 0.9%)으로, 이 중 지역기반형(77%)이 웹기반형(23%)의 3배 이상이며, 배달기사가 가장 많음(52%)¹⁾

<플랫폼 종사자 규모('20. 노동연구원)>

	취업자	플랫폼을 통해 일을 구하는 사람			
		전체	상품거래 등	플랫폼 종사자	
				광의	협의
비율(%)	100	7.6	0.2	7.4	0.92
추정규모(만명)	2,400	183	3.8	179	22.3

1)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12.2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플랫폼 종사자(협약) 유형(단위: %)>

웹기반(web-based)		지역기반(local-based)		주업·부업 여부(%)	
단순작업	34.0	배달	67.8		
창작	26.2	기타	13.0		
IT	19.8	전문서비스	11.8		
전문서비스	15.0	가사	5.0		
기타	5.0	주문제작	2.4		
소계	100.0	소계	100.0		

[플랫폼 일자리의 유형]

	웹기반(web-based)	지역기반(local-based)
의의	노무제공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짐	서비스는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짐
분야	디자인, 마케팅, 번역, IT 개발 등 전문분야	배달, 가사 등
전업or부업	주로 부업	전업, 부업 혼재
운영 형태		
정책 수요 (20.한국노동사회연구소)	표준계약서 보급 등 법제화, 불공정거래 방지, 세무·상담 지원, 경력인정시스템 구축 順	불공정거래 방지, 표준계약서 보급 등 법제화, 4대보험 적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順

-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세분화된 마이크로 과업으로 이루어진 초단기 일자리라는 특징을 가지며, 근로시간의 유연성은 있으나 고용 안정성이 낮고,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음.
- 국회 입법 현황은 장철민의원 등 20인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보호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

하기 위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플랫폼 운영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법률로 정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2108908)」을 2021년 3월 18일에 발의 하여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에 있음.

2 주요 제정 내용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플랫폼 노동”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해 정의함.
-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을 금천구에 주소를 두거나 금천구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로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 등의 추진 근거규정을 마련함.
- 안 제9조에서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위한 노무상담 등의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

3] 종합의견

- 플랫폼 일자리는 자율성의 극대화, 비공식 노동의 공식화, 노동 생산성의 향상 등 긍정적 영향이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 이면에는 불안한 고용 및 소득, 불완전한 사회안전망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또한,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현재 취업자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향후 일자리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플랫폼 노동 종사자 역시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조례안은 불안정한 노동여건 속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 현행법상 정의가 어려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기존의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관계 법령 1부.

2. 타 지자체 제정 현황 1부. 끝.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4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사업자”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4. “우리스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5. “우리스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스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 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 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0. 12. 8.>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례제정 : 16개 지자체 (광역 5, 기초 11(서울시 자치구 3, 그 외 8))

연번	자치단체명	조례명	제정일자	비고
1	대전광역시	대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22.04.15.	
2	강원도	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21.04.30.	
3	경기도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20.10.08.	22.01.06. 개정
4	경상남도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21.11.04.	
5	전라남도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20.12.31.	
6	서울 관악구	서울 관악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21.04.01.	
7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21.03.26.	
8	서울 중랑구	서울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21.01.07.	
9	부산 남구	부산 남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21.12.21.	
10	부산 영도구	부산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21.10.29.	22.07.06. 개정
11	대구 동구	대구 동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21.12.29.	
12	경남 창원시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21.03.31.	22.04.29. 개정
13	전북 군산시	군산시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21.04.06.	
14	경남 김해시	김해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21.05.21.	
15	전남 나주시	나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22.09.20.	
16	전남 무안군	무안군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21.09.27.	